

1. 세부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대전·세종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망 기술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5개 과제 내외

-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유형 및 분야: 중소기업특화로드맵(소재·부품·장비) 내 자유공모 <참고 참조>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대전·세종소재(본사 기준) 기업**

-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23년)」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 대전·세종소재(본사 기준) 이외의 기업이 제출한 경우, 각 지역별 제출 서류가 상이하여 해당지역으로 서류 이관이 불가능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매출액,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 연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5년)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4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유망기술분야를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2년,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 * 평균단가 4.8억원 이내(연 2.4억원 이내)

□ 대전·세종지역 별도 적용 사항

- 대면평가 시 지역정책 부합성, 지역특화분야 적합성, 개방형 혁신, 연구조직 인프라로 지역특화 지표 배점(20점) 별도 적용
- 중소기업특화로드맵 소재·부품·장비분야 중 미래소재,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분야와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대면평가 시 우대

<중소기업특화로드맵 소부장 대전·세종지역 특화분야>									
분야	기계금속	미래소재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바이오	그린에너지	통신네트워크
대전				○			○		
세종		○			○		○		

대면평가 시 지역별 특화지표 평가를 위한 '지역특화 지표 검토 신청서' 제출 필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대전세종지방청 R&D) 대면평가표>

구분	평가지표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기술성 (25)	기술개발 방향의 적정성	5	4	3	2	1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	15	12	9	6	3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	5	4	3	2	1
사업성 (15)	사업화 계획의 가능성	10	8	6	4	2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	5	4	3	2	1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35)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10	8	6	4	2
	연구개발역량	15	12	9	6	3
	연구윤리	10	8	6	4	2
지역특화 (20)	- 지역정책 부합성(5점) - 지역현안 관련 과제이거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 * (대전) 바이오, 반도체, ** (세종) 자동차, 바이오 • (제출서류) 별첨서식(지역특화 지표 검토 신청서)	5	4	3	2	1
	- 특화분야 적합성(5점) - 지역 특화 분야와의 기술개발 아이템 간의 적합성 판단 * (대전) 반도체, 바이오, ** (세종) 미래소재, 자동차, 바이오 • (제출서류) 별첨서식(지역특화 지표 검토 신청서)	5	4	3	2	1
	- 개방형 혁신(5점) - 기술개발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성, 기술간 융합, 신시장 창출 가능성 등을 판단 • (제출서류) 별첨서식(지역특화 지표 검토 신청서)	5	4	3	2	1
	- 연구 인프라 보유(5점)* - 기업부설연구소(5점)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3점) 보유 여부 판단(미보유(1점)) • (제출서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본	5	4	3	2	1
	자금지행계획(5)	5	4	3	2	1
합계(100)		5	4	3	2	1

* 현장조사 지표

□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동 사업은 일괄협약에 따라 반드시 총 연구기간(2년 이내)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개발방법,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6.7.1)로부터 '26.12.31까지로 설정

<연구개발 기간 예시>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하반기 (1차)	26.7.1~'26.12.31(6개월)	'27.1.1~'27.12.31(12개월)	'28.1.1~'28.6.30(6개월)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협약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20	4	36	40	160
2차년도	240	8	72	80	320
3차년도	120	4	36	40	160
합계	480	16	144	160	640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75.0	2.5	22.5	25.0	100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에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인건비, 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 채용된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 상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 증액 불가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연구실운영비)** 영리기관이 연구실운영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실운영비 활용·계획(붙임2)을 제출하여 평가위원회 승인 필요

*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구실 환경유지기기 관련 비용(사무용품은 제외)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 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IP-R&D 지원비용)**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산정 시,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창출비로 계상 가능(필요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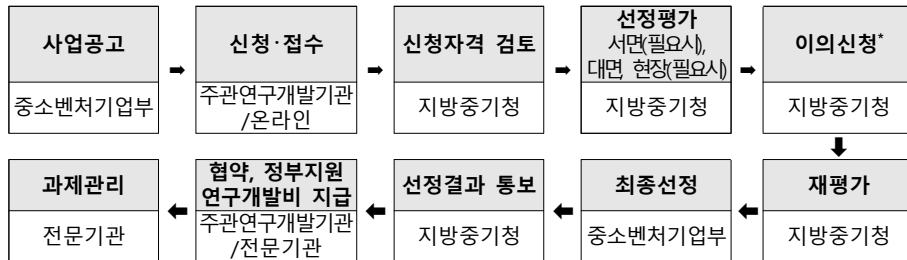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 이상**을 신규로 의무채용 해야 함
 - * 예시) 1.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2. 영리기관이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 A가 7억원,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 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을 채용하여야 함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을 유지
 -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 해당년도까지 신규 채용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 합산하여 채용 가능(다만,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1년 이상 고용 유지) 완료)
 - ** 연구 개시 시점 일괄 채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여 정부지원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가능(다만,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1년 이상 고용 유지) 완료)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정규직)
 -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실적점검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위반 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既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함
 -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 사업신청 시 기존 기관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기관부담금 비율 조정
 - ** 예시) 2명 채용 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5억원 이상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 | 구 분 | 기 준 |
|------|--|
| 신규과제 |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 계속과제 |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점검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 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3.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 서면평가는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
- *** 대면평가 대상 기업은 필요시 혁신성장역량지수(Tech-Index) 평가를 위한 표준양식 엑셀 및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제출 양식 및 제출 일정 등은 대상 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 사전검토

-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 지원 제외사유 등 결격사유 확인
-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서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정 및 방법의 적정성,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등 기술성·사업성 중심으로 평가

$$\text{서면평가 평점} = \frac{\text{서면평가 점수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서면평가 주요 평가 항목(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40)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차별성	15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15
	·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및 기술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10
사업성(20)	·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20
기술개발역량(20)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	15
	· 연구윤리	5
파급효과(15)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10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5
자금집행계획(5)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5

□ 대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대면평가 시 대상 기업의 '혁신성장역량지수(Tech-Index)'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과 성장잠재력 수준 검토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지역특화, 자금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text{종합평점} = \frac{\text{선정평가 점수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text{가점} - \text{감점}$$

-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2> 참조
- 지역특화지표 중 '연구인프라 보유(5)'는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지표로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대면평가 주요 평가 항목(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25)	· 기술개발 방향의 적정성	5
	·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	15
	·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	5
사업성(15)	· 사업화 계획의 가능성	10
	·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	5
기술개발 보유역량 수준 (35)	·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10
	· 연구개발역량	15
	· 연구윤리	10
지역특화(20)	· 지역정책 부합성(5), 특화분야 적합성(5), 개방형 혁신(5), 연구 인프라 보유(5)	20
자금집행계획(5)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5

□ 지원과제 확정

-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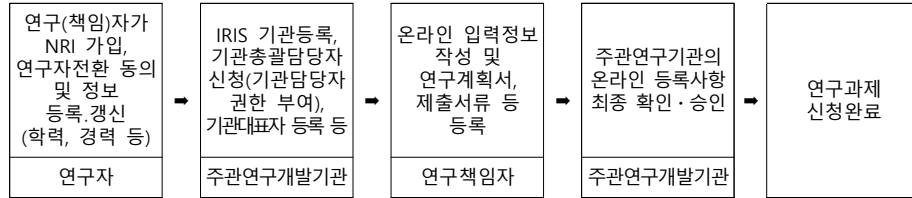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수행

4. 신청 및 접수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2026년 3월 30일(월) ~ 4월 15일(수), 18:00시까지

*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 불가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 계획서 신청·접수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제출서류

-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26.7.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18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붙임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 (별첨) 지역특화 지표 검토 신청서(<참고6> 참조)	본문1	○
		본문2	○
		붙임1	○
		붙임2	○
		붙임3	○
		별첨	○
②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④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⑤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5년)*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4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텍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텍스)	○	
⑥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⑦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⑧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5. 기타사항

□ (선택사항) 과제 선정 시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
- (지원내용) 경쟁사 특허 침해 위험 대응, 대체기술 및 신기술 R&D 정보 제공, 개발된 기술·제품 결과물 보호, R&D·IP 인력 역량 제고 지원
- (지원비용) 1차년도 과제 수행 중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을 위한 비용(30백만원(부가세별도))을 연구활동비에서 계상하여 집행
*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 세부내용은 <참고3> 참조
- (신청방법) 과제신청 시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신청
- (기타사항) IP-R&D 전략수립 신청 시 최종 선정 및 협약 시 연계 취소, 유형 등 신청 내역 변경 및 취소 불가

6.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관리기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협약, 사업비 지원, 사후관리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P-R&D 연계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042-251-1850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http://www.iris.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대전세종지방청 홈페이지 : <http://www.mss.go.kr/site/daejeon/main.do>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

참고1

중소기업유망기술분야(소부장_지방청R&D) 부문 지원 분야

□ 중소기업 특화로드맵(소재·부품·장비) 지원 분야

전략분야	전략품목	
기계금속 (15개)	발전용 핵심 장치	고효율 연자성 소재
	감속기	협동 로봇용 액추에이터
	정밀생산기계부품	항공우주용 내열 합금
	로봇용 서보모터	자율주행 AMR 구동부
	고성능 압연부품	굴삭기용 고성능 작업 어태치먼트
	금속 기반 이중접합·복합 소재	특수목적차량용 에너지회수장치
	AI 기반 사출 성형기	표면처리용 핵심 소재 및 장비
미래소재 (15개)	3D 프린팅 금속분말	
	극한성능 유·무기섬유	휴머노이드 로봇용 고기능성 소재
	미래모빌리티용 초경량 초강도 탄소소재	폐자원 기반 고순도 희토류 회수용 전구체 소재
	우주항공 및 방산용 초내열 코팅 소재	정밀광학기기 및 극한환경용 렌즈
	고전압 배터리용 난연 분리막 소재	AI·전력반도체용 세라믹 패키지 소재
	EMI 차폐방열 겸용 탄소나노 복합 시트 소재	우주항공 및 방산용 초내열 세라믹 소재
	고기능성 점접착제	저희토류·무희토류 고성능 자석 소재
디스플레이 (15개)	코팅용 에폭시 수지	전고체전지용 고체전해질 소재
	친환경 분해성 소재	
	고이동도 광·전자기 세라믹 소재	마이크로LED 고속 전사·접합 소재 및 장비
	고연신 코팅 및 기판 소재	디스플레이 공정 자동화 장비
	고성능 광학제어 소재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용 소재 및 장비
	초고차단 박막봉지 소재	프리폼 디스플레이용 검사 장비
	그린 리사이클 공정 소재 및 장비	비파괴 3차원 검사 장비
반도체 (15개)	친환경 ESG 소재	마이크로LED 광학·전기 검사 장비
	고유연 탄소 배선 부품	대면적 글라스 기판 TGV 형성 및 검사 장비
	공정 장비용 핵심 부품	
	차세대 고정밀 노광장비용 핵심부품	반도체용 차세대 식각 부품·소재
	반도체 생산용 첨단 가스소재	차세대 이송장비
	반도체 첨단 패키징용 측정·분석·검사 장비	첨단 패키징용 본더 장비·부품
	반도체용 차세대 진공 증착 장비·부품	박형 웨이퍼·다이 핸들링 장비·부품
	반도체용 차세대 습식 증착 장비·부품	전력반도체용 핵심 소재
	초정밀 가공용 CMP 부품·소재	지능형 반도체용 기판 장비·소재
	반도체 세정 장비·부품	차세대 테스트 장비·부품
	지능형 반도체용 기능성 소재	

전략분야	전략품목	
자동차 (17개)	차세대 전장 및 제어 시스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차세대 새시 부품	협력주행용 핵심 부품
	친환경 파워트레인 모듈	차량용 금속 가공 공정 장비
	자동차용 초경량 복합소재	자율주행 SW검증 플랫폼
	차량용 지능형 반도체	친환경 고급형 내장 소재
	차량용 배터리 시스템	차세대 정밀 공정용 로봇
	자율주행용 인지 모듈	인간-로봇 협업형 휴머노이드
	SDV용 통합 제어 시스템	친환경 자동차 통합 열관리 시스템
전기·전자 (16개)	차량용 수소 공급 시스템 핵심 소재 및 부품	
	MLCC 및 MLCC용 핵심소재	저유전·저손실 고주파 기판용 복합 소재
	이차전지용 외장재	AI·통신용 초고다층 신호전원 통합 PCB
	이차전지 전극/전해액 첨가 소재	전장 및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전력변환 통합 모듈
	이차전지 분리막	고주파 대응 유연 PCB 기반 인터커넥트
	광학부품 및 기기	초미세 비아 대응 고정밀 레이저 가공 장비
	황화리튬 소재	AI 기반 전자조립 품질 자동분류 검사 장비
	차세대 전동모듈	전력기기 고전압·열복합 신뢰성 시험 장비
바이오 (15개)	극한환경용 센서	극한환경용 드론
	바이오의약품 생산 다운스트림 공정 소재	바이오 자율랩
	바이오의약품 생산 업스트림 공정 소재	헬스케어 로봇
	고성능 약물 전달 및 제형화 소재	스마트 바이오 공정 제어 장비
	기능성 바이오 소재	고정밀 체외진단 장비
	AI 기반 신약개발 스크리닝 장비	AI 융합 분석·진단장비
	바이오의약품 통합 품질 관리용 핵심부품	바이오 DB 통합 관리·활용 시스템
	바이오의약품 생산 배양 공정 관리 시스템 및 부품	원격의료 장비
그린에너지 (14개)	헬스케어 핵심 전자 부품	
	차세대 태양전지	차세대 원전용 핵심 기기
	수전해 스택 및 BOP	대형 해상풍력 핵심 부품
	수소 저장 장비	회도류 저감형 자성 소재
	연료전지 스택 및 BOP	재생에너지 연동형 스마트 인버터
	이차전지용 고에너지 밀도 소재	차세대 송전 부품
	지능형 ESS 관리 시스템	AI 기반 폐배터리 자원 재활용 시스템
	탄소 포집 및 자원화 설비	수소생산 촉매
통신·네트워크 (15개)	통신용 전력 증폭기 핵심 소자 및 부품	AI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저손실 통신기판 소재	초고속 인터커넥트 부품
	위성 위성배열 안테나	광선로 인프라 상태 감시 장비
	RF 부품 및 모듈	O-RAN 기지국 장비
	저손실 전자기 차폐 소재	산업 인터넷 상글페어 통신 모듈
	NCR 네트워크 제어 중계기	TSN 기반 산업용 멀티프로토콜 변환 모듈
	대용량·초고속 광송신 및 수신부품(LD, PD)	TSN wireless 확장 모듈
	초고속 광트랜시버	

참고2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증빙서류)

□ 가 · 감점

- (가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대사항별 가점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단, 공통가점 중 성과창출 강화 항목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공통 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성과창출 강화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 최종평가 결과 '우수' 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책임자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포상 또는 시상을 받은 기업 *중소기업R&D우수성과 50선에 선정 되었으나,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여 장관 포상을 받지 않은 기업 포함	2점	표창장, 상장 등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최근 3년 이내에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포상 또는 시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2점	표창장, 상장 등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 완료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조기 완납한 기업이 신청한 과제 * 조기완납 기준: 기술료 납부 1~3차년도 납부기한까지 기술료 상환금액을 완납한 경우 ** 단, 기술료 상환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1점	조기완납기업 확인서 등
생태계 보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제2에 따른 장애인기업확인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하여 지정된 지역 소재 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지역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는 경우	2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과제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 임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1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증

* '중소기업R&D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기업은 상기 가점 외에 선정평가시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지표"점수를 최고점으로 부여함(단, 선행연구와 중복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소부장) 가점 >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①	TIPS-R(팁스알) 졸업 기업 중 성공판정기업	1점	전문기관 확인 (창업진흥원 제도전창업실)
②	최근 3년 이내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③	「K-유니콘 프로젝트(예비유니콘 특례보증)」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예비유니콘 인증(선정)서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1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⑦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⑧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기업	1점	환경표지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⑩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⑪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우수단계 선정 중소기업	1점	기술보호선도기업지정서 (유효기간 내 지정서에 한함)
⑫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서 (유효기간 내 지정서에 한함)

- (감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공통 감점 >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방법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 (유의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참고3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 내용

□ 지식재산(IP) 전략수립지원 개요

- (목적) 수출 시장 중심의 국내·외 경쟁사 핵심 특허 분석을 통해 대응 전략 및 해외 시장 IP 권리 확보 등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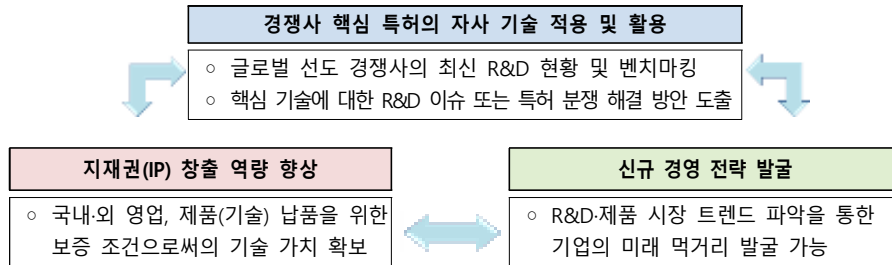
- (예산) 주관연구개발기관 R&D 연구활동비로 진행

구분	IP 전략수립지원			
타입 (택1)	기본 타입 (R&D 초기 대응 전략)		심화 타입 (R&D 중장기 전략)	
소요 비용 (R&D 예산)	3,000만원 (부가세 별도)		6,000만원 (부가세 별도)	
지원 기간	2.5개월 지원 R&D 시작 후 1년 이내 지원		5개월 지원 1년 이내 1회, R&D 종료 전 1회	
IP전략 지원 내용	기본	필수+선택(택1)	1년 이내	
	심화	필수+선택(택2)	1년 이내	R&D 종료 전 1회
	필수	① 핵심특허 대응 경쟁사 특허 침해 위험 해소	- 주요 경쟁사 핵심 특허 조사분석 - 핵심 특허에 대한 회피, 무효화 전략 제공	세부 기술별 대응 방안 수립 (공동연구, 위탁연구기술)
	선택 1	② R&D정교화 대체기술 및 신기술 R&D 정보 확보	- R&D 방향 제시 및 중복연구 방지 - 회피기술, 개량 기술 등 R&D 아이디어 제시 - 경쟁사 IP-Portfolio 및 관련 기술 특허 DB 제공	- 후속 R&D 방향 제시 - 세부 기술별 선행기술 조사 분석을 통한 융합 및 대체 기술 방안 제공 - 특허 DB 보강
	선택 2	③ 신규 IP 창출 개발된 기술·제품 결과물 보호	- 기출원 특허 보강 - 특허 창출 전략 제시	- 추가 개발 기술에 대한 보강 특허 창출 - 해외 특허 창출 전략 제시
	후속 지원	- 출원 비용 지원: 국내(200만원 이내), 해외(500만원 이내) - IP교육, R&D교육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의 R&D 현황에 따라 IP 전략수립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기대 효과

-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맞춤형 IP 전략지원으로 다양한 연계 효과 도출



<IP 전략수립지원지원 절차>

구분	내용	세부내용
R&D 지원	기술혁신개발사업 R&D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이 R&D 과제 수행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간 R&D 과제 협약 체결(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등)
IP 전략 수립지원 협약	IP 역량진단	○ 특허전략전문가(PD)가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사전 현장 방문 및 IP 전략 수립지원 과업 범위 협의
	주관연구개발기관별 협약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납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간 IP 전략 수립지원 별도 협약체결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금) 납부 * R&D 연구개발비 내 연구활동비 활용 * 전자세금계산서 청구 예정
IP 전략 수립지원 추진	특허정보 분석기관 선정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으로 IP 전략 수립지원 과제를 수행할 특허정보 분석기관 공개 모집 및 선정
	IP 전략 수립지원 밀착 지원	○ IP 전략 수립지원 추진 ○ 최종보고회 개최 및 전략보고서 제공

※ 상기 지원 절차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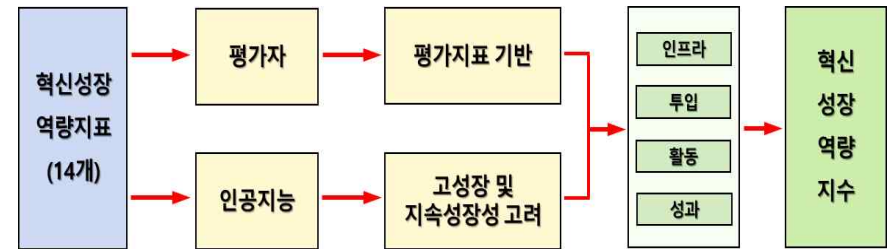
참고4

혁신성장역량지수(Tech-Index) 개요

□ 테크인덱스 개요 (Tech-Index, 혁신성장역량지수)

- (기본개념) 기업의 현재 기술혁신 역량과 성장잠재력 수준을 데이터 기반으로 측정하여 미래성장성 관점에서 지수화(0점~100점) 하는 AI 기반 평가시스템

- 4대 기술혁신역량 ①인프라, ②투입, ③활동, ④성과 측면에서 각 점수를 도출한 후 기술혁신기반 성장성을 고려하여 최종 복합지수 산출



- (지수의의미) 현재 기업의 내재적 기술혁신역량을 나타내는 지수(Index) 이면서 동시에 미래 성장(고성장, 지속가능성장) 가능성을 예측하는 확률 점수(Score)
- (특·장점) 설문조사 방식의 경제지수와 달리, 객관적 빅데이터에 기반한 모형방식의 지수 산출구조로 통계지수로서의 신뢰성 강화
- (활용성)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기업선별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 혁신활동 분석 및 시계열 추적관리, 산업·사업·지역별 분석 등 가능

□ 우리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문과 함께 불법브로커 주의 안내문 게시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표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 <https://tipa.or.kr> (☞참여마당→원클릭신고창구)
- (부정사용신고센터) <https://smtech.go.kr> (☞고객지원→부패행위 신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대전·세종지역특화 지표 세부 내용

구분	평가지표	평가 기준
지역특화 지표 (20점)	지역정책 부합성 (5)	- 지역 현안 관련 과제이거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 - (대전) 바이오, 반도체 - (세종) 자동차, 바이오 • (제출서류) 별첨서식(지역특화 지표 검토 신청서)
	특화분야 적합성 (5)	- 지역 특화 분야와의 기술개발 아이템 간의 적합성 판단 - (대전) 소부장특화로드맵 중 반도체, 바이오 분야 - (세종) 소부장특화로드맵 중 미래소재, 자동차, 바이오 분야 • (제출서류) 별첨서식(지역특화 지표 검토 신청서)
	개방형 혁신 (5)	- 기술개발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성, 기술간 융합, 신시장 창출 가능성 등을 판단 • (제출서류) 별첨서식(지역특화 지표 검토 신청서)
	연구 인프라 보유 (5)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여부 판단 • (제출서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본)

□ 지역특화 지표 관련 유의 사항

○ **대면평가 시 지역특화 지표 적용(최대 20점)**

- 지역특화 지표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자료 작성 및 제출 필요
- 대면평가 시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지역특화 지표 점수 반영 예정
- 지역특화 지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없음'으로 제출(필수)

○ **지역 지표 항목과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의 부합성 제시 필요**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내용과 평가지표의 부합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 평가지표 항목별 증빙자료가 필요할 경우, 근거자료 첨부 필수 (인증자료, 특허등록증 등의 증빙자료의 경우 페이지 수 미포함)
- 접수 마감일 이후 추가 제출 불가**

별첨 지역특화 지표 검토 신청서

※ 지역특화 지표 검토를 위해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미해당시 : “해당없음”으로 표기)

1. 지역정책 부합성

* 최대 1페이지

※ 지역정책 부합성 분야와 연구개발 과제의 부합성을 작성
※ (참고) 지역정책 부합성 분야 : 소재지(대전과 세종이 다름) 별 지역정책 부합성 분야가 상이하므로 확인 필수
* (대전) 바이오, 반도체
** (세종) 자동차, 바이오

☐

○

-

☐

○

-

2. 지역 특화분야 적합성

* 최대 1페이지

※ 지역특화 지표 검토를 위해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미해당시 : “해당없음”으로 표기)

※ 지역 특화분야와 연구개발 과제의 부합성을 작성
※ (참고) 특화분야 : 소재지(대전과 세종이 다름) 별 특화 분야가 상이하므로 확인 필수
* (대전) 반도체, 바이오 분야
** (세종) 미래소재, 자동차, 바이오 분야

☐

○

-

☐

○

-

3. 개방형혁신

* 최대 1페이지

※ 지역특화 지표 검토를 위해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 개방형혁신은 기술개발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성, 기술간 융합, 신시장 창출 가능성 등의 부합성을 작성

※ (참고) 개방형 혁신 : 대전과 세종이 개방형 혁신은 동일함



-



-

4. 연구 인프라 보유

* 최대 1페이지

※ 연구 인프라 보유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첨부

※ (참고) 연구조직 인프라 : 대전과 세종이 연구조직 인프라는 동일함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현재의 페이지에 인정서 스캔해서 첨부

- 해당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기재